

# 事例 중심으로 본 환경보전 법규 질의·응답 해설(연재Ⅱ)

배출업체의 기업주와 환경관리인, 환경관계자들이 법해석과 운용 면에서 겪은 어려움을 환경청에 질의한 내용과 그 회신내용을 발췌해 사례별로 엮어 본다. (편집자註)

## II. 인조피혁제품 생산시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 1. 사례내역

#### 1. 질의 및 회신 근거

질의 : 경기도 양주군 사회 31813-1651  
('87.7.20)

회신 : 수관 31813-7558 ('87.7.31)

#### 2. 질의 내용

1) 섬유 가공품을 주원료로 표면처리와 수세과정을 거쳐 모조피혁을 생산함에 있어, 본 업종이 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2의 폐수배출시설 “사”호에 해당되거나, 또는 “카”호에 해당되는지?

가) 갑설 : 모조피혁을 생산하거나 원료와 생산공정이 섬유가공이므로 “카”호인 섬유가공업종에 해당됨.

나) 을설 : 섬유원단을 주원료로 공정이 이뤄지나 생산제품이 가죽으로 “사”호인 피혁제조시설에 해당됨.

2) 수세과정에서 발생되는 D.M.F가 함유된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집수 후 타 업소로 수송하여 재생처리할 경우 환경보전법 제 15 조에 의한 허가대상 시설이 되는지의 여부

가) 갑설 : 생산공정에서 사실상 방류 폐수가 없으므로 허가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나) 을설 : 방류폐수가 없다 할지라도 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2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허가대상임.

#### 3. 회신내용

인조가죽 제조공정은 동법 시행 규칙 별표 2, 다. 폐수배출시설중 “카” 섬유제조시설에 해당(한국산업표준 분류 32194. 참조)되며, 동 제조공정이 세척시설 등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 때에는 동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법 제 15 조의 2 제 1 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코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2. 해 설

### 가. 법규상의 배출시설 설정방법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법규상의 배출시설 설정방식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배출시설이 어떻게 설정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선 동 별표의 형식 및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 별표는 첫째로 구분란에 한국표준산업분야에 따라 배출시설이 될 수 있는 산업분야를 지정하고 있는 바, 모두 24개의 산업분야가 지정되어 있다.

둘째로 배출시설란에 동 산업분야에 해당될지라도 어떤 생산공정이나 제조공정이 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표시하는 단위공정을 지정하고 있다. 예를들면 가죽 및 모피제품 산업분야에는 세척시설, 침지시설, 염색시설, 유제시설 및 석회지시설이 지정되어 있고, 섬유제조 산업분야에는 세척시설, 표백시설, 정련시설 등 8개 공정이 지정되어 있다.

세째로 지정된 24개 산업분야의 하나이며, 별표에 열거된 단위생산공정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시설합계란에 명시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해당되어야 한다. 예컨대 섬유제조 산업분야의 세척시설은 그 규모가 용적 2㎥이상 또는 용수 사용량이 시간당 1㎥이상되는 경우에만 배출시설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때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은 사업장 단위로 해당되는 시설의 총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용적 2㎥의 세척시설이 한 사업장내에 3개소 있으면 시설합계는 6㎥가 되는 것이다.

네째로 앞에서 지정된 산업분야별로 지정된 공정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인 업종을 열거하고 있다. 예를들면 섬유제조 산업분야의 지정된 공정을 갖추고 있는 업종으로서 제사 및 방직공장, 직조공장, 섬유·염색 또는 가공공장 등이 열거되어 있다.

다섯째로 어떤 생산공정이나 제조공정은 대부분의 산업분야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특정산업분야에 소속시킬 수

없으므로 산업분야 25호에 공통시설란을 설치하여 여기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로 위에서 열거한 24개 산업분야에 해당은 되지 않으나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생산공정이나 제조공정은 구분(산업분야별 구분) 26호에 기타시설란을 설치하여 여기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단위생산공정 소속산업분야의 결정

위에서 본 것처럼 사업장의 생산공정 1단위가 배출시설을 결정하는 단위가 된다. 그러므로 실제로 있어서는 생산공정단위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그 생산공정이 별표 2에 열거된 24개 산업분야 중의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24개 산업분야 또는 공통시설 및 기타시설란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배출시설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어떤 단위생산공정이 24개 산업분야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라도, 그 중의 어느 산업분야에 소속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산업분야별로 배출시설 결정의 기준이 되는 시설규모를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일정규모의 생산공정이 A라는 산업분야로 분류될 때는 배출시설로 분류되나 B라는 산업분야로 분류되면 시설규모의 기준미달로 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본 사례의 경우 원료 및 생산공정은 산업분야 “카”호의 섬유산업 분야에 속하나 생산되어 나오는 제품은 피혁이므로 산업분야 “사”의 가죽 및 모피제품 분야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별표 2는 본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초를 둔 것으로 동 분류 32194에 의하면 섬유제품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다. 허가대상시설 해당여부

허가대상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곧 동 시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일단 배출시설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동 시설은 곧 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배출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1 항에서 설명한 과정을 거쳐 판단되어야 하나, 만일 1 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모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배출되는 폐수나 오염물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출시설이 될 수 없다.

본 사례의 경우처럼 배출된 폐수를 타업소에서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는 경우라도 일단 폐수가 배출되는 이상 배출시설에 해당됨은 틀림없으나, 다만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시 허가기관으로 으로부터 자가처리자 지정 또는 위탁처리자 지정을 받아 사업자가 직접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 III. 방지시설 설치면제 승인을 받은 배출시설의 관리

#### 1. 사례내역

##### 1. 질의 및 회신 근거

질의 : 부산 지도 31720-516 ('88.3.12)  
회신 : 대관 31720-2301 ('87.3.17)

##### 2. 질의 내용

- 1)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설치완료 후 확인조사 및 시험가동 절차는 면제받지 못한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
- 2)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라도 사후 확인검사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서 정하는 오염물질 측정시설을 설치토록 할 수 있는지?
- 3) 동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배출시설도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또한 동 배출시설이 조업개시 후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는지?

#### 3. 회시 내용

- 1) 면제받은 배출시설 시공 후의 확인조사 및 시험가동은 면제받지 않은 배출시설의 경우와 동일하고,
- 2)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이라도 동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3) 자가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면제 받은 배출시설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 및 방지시설 설치명령 모두 가능하나, 방지시설 설치명령은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승인을 취소한 후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 4. 참조 조문

환경보전법 제 15 조의 2 및 제 16 조, 동법 시행규칙 제 24 조 내지 제 27 조 및 제 37 조 (별표 8)

#### 2. 해설

##### 가.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승인 제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사업장)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법 제 14 조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스스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 15 조 4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 등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법 제 15 조의 2).

이는 우리나라의 오염규제방식이 총량규제가 아니라 농도규제방식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라도 일정한 배출허용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동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상 문제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술적 검토를 거쳐 확인되면 방지시설을 설

치토록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면제승인을 신청 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득함으로서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업소로 확정된다.

#### 나. 면제승인을 득한 배출시설의 확인조사 및 시험가동 절차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도 배출시설 설치 완료 후의 환경당국에 의한 확인조사 및 시험가동 절차는 동일하다. 사업자는 규칙 제 24 조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완료 신고와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은 설치 완료 신고된 배출시설의 내용이 당초 허가한 사항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 조사한다.

허가한 사항과 부합될 때에는 일정기간의 범위 안에서 동 배출시설의 시험가동을 명하며, 시험가동 결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방지시설 설치면제 승인 사항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나면 적합판정을 내려야 한다. 사업자는 적합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동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행위를 할 수 없다.

#### 다. 면제승인을 득한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시설 설치여부

방지시설 설치 면제승인을 받은 배출시설이라 할지라도 당해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는 바, 면제승인을 받은 배출시설도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측정시설을 설치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라.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승인 취소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이 동 시설의 관리소홀 또는 노후화 등으로 그 기능 및 공정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동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동 배출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의 공정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당초의 면제승인이 잘못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승인을 취소하고 방지시설의 설치를 명해야 한다.

#### 마. 방지시설 설치명령

방지시설의 설치의무 면제승인은 환경청장이 하고 있으나, 동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도지사 또는 환경지청장이 하고 있는바, 동 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결국 시·도지사 또는 환경지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시·도지사 또는 환경지청장은 방지시설의 설치면제승인을 받은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하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환경청장에게 방지시설 설치면제승인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의 방지시설 설치 면제승인 철회 없이도 지도·점검기관에서 방지시설 설치명령을 할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

## 우리모두 환경보전

- 공장·세차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는 깨끗이 정화합시다.
- 정화조는 반드시 1년에 한번씩 청소합시다.
- 합성세제는 포장지의 표시에 따라 알맞게 사용합시다.
- 음식찌꺼기는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따로 싸서 버립시다.
- 하천이나 빙터에 오물을 버리지 맙시다.
- 자연보호에 적극 참여하여 쾌적한 환경을 이룩합시다.